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 정관

2003. 11. 15. 제정
2005. 02. 02. 개정
2005. 12. 19. 개정
2007. 12. 12. 개정
2008. 12. 12. 개정
2011. 01. 06. 개정
2011. 11. 11. 개정
2013. 04. 05. 개정
2014. 03. 31. 개정
2015. 04. 15. 개정
2016. 08. 01. 개정
2019. 02. 22. 개정
2021. 07. 15. 개정
2022. 06. 2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약칭 KSHP)”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전문가적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증진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병원에서의 약 관련 업무와 병원약학에 관한 연구·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여 보급하고 회원의 직업윤리 확보와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5에 둔다. (개정 2021.07.15)

②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각 시·도, 해외 및 군약(군 병원약사)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해외 지부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지부의 결성 총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합리적 약물사용관리와 약물요법에 목적을 둔 병원약제업무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병원약제업무의 적절한 표준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업
 3. 잘 훈련된 유능한 병원약사의 적절한 배출에 관한 사업
 4. 병원약사의 능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관한 사업
 5. 합리적인 병원약제업무 및 약물사용에 관한 정보의 확산에 관한 사업
 6. 병원약사와 기타 의료산업 종사자 및 국민과의 의사전달체계 향상에 관한 사업
 7. 병원약학과 병원약제업무의 연구 촉진에 관한 사업
 8. 회원의 친목·복지 및 취업에 관한 사업
 9. 사고 및 분쟁에 관한 공제회 운영 사업
 10. 병원약제업무지원인력의 질 향상에 관한 사업
 11.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③ 본회 사업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정책 및 제도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1.07.15)

제5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은 이사회 의 의결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으로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6.24)

1. 정회원 :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
2. 준회원 : 정회원이 아닌 자로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단체

제7조(회원의 가입 및 신고)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회원신고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가입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06.24)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약사관계법령, 약사윤리 및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매년 신상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본회 회원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5. 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회비, 기타 부담금의 종류, 납입방법 및 그 부담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 탈퇴는 임의로 하되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을 위반한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기타 본회의 회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징계의 종류와 내용,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기타) 회원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7~10인 (수석부회장 1인 포함) (개정 2005.12.19, 2008.12.12, 2011.01.06)
3. 상임이사 14~18인 (개정 2005.12.19, 2011.01.06)
4. 이 사 58~62인(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각 지부장 포함) (개정 2005.12.19, 2008.12.12., 2011.01.06., 2022.6.24)
5. 감 사 2인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정회원 외의 자를 상근임원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07.12.12)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지부를 지도·감독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잔여임기 1년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장의 회무집행을 보좌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1. 본회의 회무·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

-
2. 이사 및 이사회 업무집행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회장에게 고지하여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6.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되,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명단을 제출한다.

②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고,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에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보선) ① 회장이 잔여임기 1년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대의원총회에서 2개월 이내에 재선출하고, 1년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② 감사가 잔여임기 1년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고, 1년 이내에서 1년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12.12)

③ 기타 임원의 결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17조(명예회장) ①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본회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장역임자 중 이사회의 추천과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회의운영에 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해 수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자격상실) ① 상근임원을 제외한 본회 임원이 병원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07.12.12, 2013.04.05)

② 본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태만한 때
3.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기타 본회의 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장 대 의 원

- 제20조(대의원의 종류 및 선출 등)** ①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선출대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를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기타 대의원의 선출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회무에 관하여 서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 제22조(회의의 종류)** ① 본회의 회의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관하여 제5장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19.)

제22조의2(원격영상회의) 제22조에서 규정한 대의원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는 직접 대면 회의 방식 외에도 각 회의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도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4.)

제1절 대의원총회

제23조(대의원총회)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한다.

- 제24조(대의원총회의 소집)** ① 정기대의원총회는 년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대의원총회 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이 소집한다. (개정 2014.03.31)
-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
-

의 의결에 의한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회의 안건·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정기대의원총회는 개최 15일 전, 임시대의원총회는 10일 전에 대의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전통지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소집요구가 있는 후 2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요청자가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의2(대의원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의원총회를 서면(전자적 방법 및 전자메일을 통한 회신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결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관련 법령이나 정부의 권고에 따라 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2. 운영상 긴급 등을 이유로 이사회 의결에 의한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서면 결의된 사항은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4.)

제25조(상정안건) ①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대의원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상정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채택된 안건만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③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 제안은 출석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2.06.24.)

제26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8.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7조(대의원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6.24.)

②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은 의사정족수 산정 시 재석으로 포함하고 다수 결의에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정관 개정,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2.06.24.)

③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의장 및 부의장) ① 대의원총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②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며, 대의원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다만,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제29조(회의록) ① 대의원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감사 1인 및 의장이 지명한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일시·장소·출석 대의원 수 및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대의원총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총회의결 제척사유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및 회원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된 사항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제3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및 감사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장소 및 일시를 기재하여 정기이사회는 개최 15일 전, 임시이사회는 10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전통지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3조(상정안건) ①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은 대의원총회 7일 전까지 본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상정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채택된 안건만 이사회에 제출한다.

③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익사업의 운영 및 수입금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15)
 9. 기타 주요 사항 (신설 2021.07.15)

제35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의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질문 및 의견을 펼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36조(서면결의) 회장은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 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회의록) 이사의회의 회의록은 회장, 감사 1인 및 회장이 지명한 이사 3인이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출석의무) 이사는 이사회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만일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상임이사회

제39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상임이사회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
 4.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6.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무집행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

10. 직원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위원회

제41조(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1.11, 2013. 04.05, 2015.04.15)

② 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04.15)

제7장 (삭제 2019.02.22)

제42조 (삭제 2019.02.22)

제8장 지부장회

제43조(지부장회) ① 본회는 회무집행의 원활과 각 시·도 지부의 회무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각 시·도 지부장으로 구성되는 지부장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장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④ 지부장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부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08.01)

제9장 지 부

제44조(지부의 명칭 및 사무소) ① 본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부를 둘 수 있으며, 명칭은 서울특별시, 각 시·도, 군약 및 해외 병원약사회라 칭한다.

② 지부의 사무소는 각 시·도 중심 소재지에 둬야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지부회칙) 지부는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본회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6.24.)

제46조(보고의무) ① 지부는 지부의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는 본회에서 시달한 제반 회무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 보고하여야 한다.

-
- 제47조(지도감독)** ① 본회는 지부의 회무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 본회 회장은 지부에 분규가 있을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8조(권한의 위임)** ① 본회 회장은 제4조에 의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권한을 각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49조(재원)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금과 부담금 등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제50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지부재산의 구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본회 및 지부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51조(예산 및 결산)** ①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3.31)
② 당해연도의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당해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대의원총회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채무부담)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장 사무국

- 제54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각종 간행물 및 인쇄물을 발간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직원의 임명, 급여 및 집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
-

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 칙

제55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으로 인한 본회의 잔여재산은 대의원총회의 결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제56조(정관개정시 협의) 정관 제6조 제1호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거친 후 제27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7조(서면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없다.

제5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3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59조(광고) 본회의 대의원총회 소집과 회무 등에 관한 모든 광고는 본회의 기관지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06.24.)
